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안 설명

□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광진구 제2선거구 출신 오현정 의원입니다.

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,

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등 보훈 관계 법령 등에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으로 정한 보훈대상자중, 아직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훈대상자를 감면규정에 포함하여, 공원 입장료 면제 대상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□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가. 보훈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으로 정한 보훈대상자중, 현행 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」 제20조제1항에서 규정되지 않은 입장료 면제 대상자를 추가함(안 제20조제1항9호~13호)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
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.